지평지성 뉴스레터
JIPYONG JISUNG NEWSLETTER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2년 9월 제42호

▌최신 판례▐

[도산]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기와 면책신청의 종기는 언제인가

배성진 변호사 | 서준희 변호사

1. 사실관계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으나 채무자가 그에 따른 변제를 지체함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짐.

이후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함. 이에 채무자는 각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함.

2. 쟁점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기 및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의 면책 신청기간

> 제624조(면책결정)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
>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방콕 | 자카르타 | 양곤
Copyright 2012 JIPYONG JISUNG All rights reserved.

3. 판시사항

[1]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 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가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제1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제2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②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③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 ④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방콕 | 자카르타 | 양곤
Copyright 2012 JIPYONG JISUNG All rights reserved.

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해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이 면책신청의 종기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종료의 효력과 면책제도의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종료를 면책신청의 종기로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뿐 아니라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종료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방콕 | 자카르타 | 양곤
Copyright 2012 JIPYONG JISUNG All rights reserved.